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혁** · 최연홍*** · 김태환****

〈 차 례 〉

제1장 서론

- I. 서언
- II. 한국 폐기물 법과 정책의 발전
- III. 廢棄物문제의 실태 및 문제점

제2장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폐기물 법정책

- I. 순환형사회제도

제3장 확대생산자책임

- I. 도입 배경
- II. 개념
- III. 책임의 내용
- IV. 제도의 유형화
- V. 제도의 평가

제4장 폐기물처리의 국제화

- I. 국제조약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강화
- II. 폐기물처리의 국제협력의 추진
- III. 쓰레기소각플랜트의 해외수출의 확대

제5장 맺는 말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신청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도과대 교수

**** 용인대학교 교수

제1장 서론

I. 서언

환경의 세기인 21C에 있어서 폐기물문제는 환경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환경선진국들은 그 동안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하여 대기나 수질문제 개선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폐기물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환경법과 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님비현상과 매립장 확보난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폐기물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21세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글로벌한 근원적인 폐기물 법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 회수 처리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폐기물 재활용에 성과를 얻어 왔다. 또 1995년에는 NIMBY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발생저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책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 저감과 재활용에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1회용품과 각종 포장폐기물의 사용이 늘고 있어 그 저감대책이 시급하다. 또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다시 매립되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행 폐기물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앞으로 전개 될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수립·적용할 폐기물 법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21세기의 폐기물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법정책으로 순환형 사회 구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최근 EU 여러나라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포괄적 또는 통합 재활용시스템(Extended or shared Producers Responsibility) 도입문제와 생산자 책임원칙 및 폐기물 처리 문제의 국제화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II. 한국 폐기물 법과 정책의 발전

우리나라의 폐기물법과 관련 정책의 발전을 1960년대의 오물청소법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략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¹⁾.

①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 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특별청소구역”이라 부름)에서의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가 주된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시대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었다. 이 법의 73년 개정법률부터는 “오물”의 개념에 “폐기물”을 포함시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②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1970년대말에 들어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부각되면서 환경법의 제정과 중앙부처단위의 환경조직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환경청이 1980년에 발족되었다. 1978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환경법의

1) 박수혁, 환경법과 정책, 66면; 신현국,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환경법연구 제19권(1997), 24면 이하.

제정과 환경청의 발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방향은 종전의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보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 나갔다. 또 농촌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산업폐기물은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었다. 당시로서는 아직도 폐기물을 “처리개념”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

환경청은 일원화된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986년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상의 폐기물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새로운 특색으로는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오수·분뇨등이 1991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④ 복수법시대(1993~현재)

1992년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분리·정비하였고, 또 1994년에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1995년에는 NIMBY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폐기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분법·정비하였다.

이 시대에는 범국가적으로 분리수거(1990년), 쓰레기 종량제(1995년),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1999년) 등 주요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한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제도가 도입되었고, 둘째,

1995년부터 쓰레기從量制를 시행함으로써 폐기물감량이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분리수거문제가 해소되는 계기를 맞았다. 셋째, 폐기물관리정책이 “처리”→“재활용”→“감량”쪽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최소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⑤통합생산자책임제도 및 순환형 법제도 시대

'90년대 말부터 이러한 정책도입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법제도와 정책의 도입과 정착이 예상된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Ⅲ. 廢棄物문제의 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분류하고,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1. 폐기물발생량 추이

전반적으로 폐기물발생량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은 지속적인 감량정책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포장폐기물이 각각 30%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분리수거와 종량제도입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폐기물발생량 추이〉

(萬톤/일)

구 분	'93	'94	'99	2000
계	141.4	147.0	148.0	147.8
생활폐기물	62.9	58.2	45.6	46.4
사업장폐기물	78.4	88.9	103.8	101.4

2. 폐기물 처리실태

생활폐기물의 再活用率은 '90년대 중반에는 소각처리율은 지방재정부
 족, NIMBY현상등으로 낮게 증가하다가 2000년에 접어들어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는 비교적 재활용, 매립, 소각의 순
 으로 안정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소각의 비중이 높
 아지고 매립의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폐기물 처리실태〉

(%)

구 분	'93	'94	'99	'20
생활 폐 기 물				
재 활 용	11.5	15.4	38.1	41.3
소 각	2.4	3.5	10.2	11.7
매 립	86.2	81.1	51.6	47.0
사업장폐기물				
재 활 용	66.7	61.3	69.2	66.5
소 각	1.9	4.6	6.1	7.9
매 립	31.4	34.1	18.5	18.7
해 양 투 기			6.2	6.9

최근 몇 년간의 우리나라의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실적은 아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아직 독일에 비하여 재활용률에 있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률 비교

(%)

구 분	한 국			독 일	
	1995년	2000년	2002년	1995년	1997년
종 이 류	53.2(47)	59.8(55)	(60)※	90(64)	93(70)
유 리 류	56.6(42)	67.4(52)	(60)	82(72)	89(75)
플 라 스틱 류	15.7(5)	26.3(20)	(25)	64(64)	69(60)
P E T 병	3.6(10)	54.2(45)	(55)	—	—
금 속 캔 류	17.2(20)	63.1(40)	(52)	64(72)	84(70)+

※ ()는 연도별 재활용 목표율임, + ()는 1999년 이후의 목표율임

※※ 독일의 경우 금속캔은 스틸캔의 자료이고 알루미늄의 경우 1995년→51(64), 1997년→86(60)임

3. 전 망

중량제 실시 후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크게 줄어 들었지만, 더 이상의 감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경기침체기에도 소비생활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경기가 활성화되면 생활폐기물은 점차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1990년대 중반에는 소각시설, 도시종합폐기물처리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실시되었으나, 그 후에도 NIMBY현상에 대한 효과적 대책이 미흡하여 부지확보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재활용률 제고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예치금제도의 비효율화에 있다고 판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보다 강조한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하여 재활용업계에서는 재활용의 한 중심 축인 재활용업계를 배제한 재활용촉진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지금까지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여 유보시켜왔다.

아울러 OECD폐기물관련규정이 국내제도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규정과 조화되도록 정책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재활용제도(EPR)의 도입,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등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의 국제동향에도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 EU包裝指針 발효등 包裝規制 強化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포장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

특히 20세기에는 순환사회 구현에 우리나라 환경법과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환경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제2장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폐기물 법정책

I. 순환형사회제도

1. 의 의

오늘날 순환형 사회의 구현 또는 형성이 폐기물 법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화두이다. 아직 순환형 사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품을 철저히 재자원화하여 폐기물을 줄여

나가는 사회란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순환형 사회 이외에도 자원 순환형 사회라든지 '폐기물 무배출(Zero Waste)사회'²⁾ 또는 '폐기물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³⁾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활용이 한 번 쓴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기술적 의미가 강한 데 비해, '순환형'은 자연 내지는 자원 전체의 효용과 맞물려 있다. 유엔이 1987년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사회'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순환형사회기본법에 의하면 순환형사회는 제품등이 폐기물 등으로 되는 것이 억제되고, 제품등이 순환자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이 순환적인 이용이 되도록 촉진되며, 순환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환자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분이 확보되어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여 가능한 한 환경에의 부하가 저감되는 사회(제2조 제1항)라 정의하고 있다. 즉, 순환형 사회란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등의 발생 억제」, 「폐기물등의 순환적이용」, 「폐기물등의 적정처분」의 순서로 대응하고, 「천연자원의 소비억제」,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물론 폐기물처리방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바,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열회수(thermal recycling), 적정처분의 순이다.

2. 외국의 동향⁴⁾

(1) 독일

독일은 폐기물 발생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져서 폐기물법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를 몇 단계⁵⁾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002년 기본연구과제

3) 安田火災海上保險・安田總合研究所(편), 循環型社會ハンドブック, 2001, 292면.

4) 이에 대한 외국의 법제는 박수혁, 폐기물 자원화 입법에 관한 비교 연구, 도시과학논총 제25권(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212면 참조.

5) 상세는 박수혁, 외국의 폐기물법제도에 관한 연구와 조사, 법률행정논집 제2권(1994), 100면 이하; Jörg Lücke, Die Abfallproblematik nach dem Abfallgesetz,

처음에는 폐기물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Kommunalrecht)의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72년에 연방 차원의 폐기물처리법(Abfallbeseitigungsgesetz)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폐기물처리법은 오직 폐기물의 수거만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증가하는 폐기물의 분량과 충분하지 않는 소각시설로써 폐기물처리법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986년에 폐기물방지 및 처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약칭하여 폐기물법)이 제정되었다. 이 폐기물법도 1994년에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 und Abfallgesetz, 순환경제법)으로 변형되었다. 이 새로운 법률의 기본적 목적은 천연자원의 절약으로 공장의 생산공정과 소비의 영역에서 폐기물 회피(Vermeidung)를 위한 의무와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도록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소유자가 처리하려고 하는 모든 동산, 또는 그것의 올바른 처리가 특히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독일의 폐기물은 세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즉,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발생이 억제되어야 하고, 회피될 수 없으면 폐기물을 이용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물론 폐기물의 이용은 매립이나 소각에 우선된다.

1991년에는 포장재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한 명령, 이른바 포장재폐기물규제령⁶⁾이 제정되어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폐기물 발

한독법학, 제 9·10호(1991~1992), 290~291면 참조.

6) 이에 관한 상세는 Brück/Flanderka, Verpackungs Recht, Hüthig, 1995 참조.

생의 회피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 명령은 포장재로부터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폐기물관리의 전체시스템을 구축한다. 포장재의 크기 및 무게가 규제되어 있고, 포장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규정되어있다. 이 법은 재사용이나 재활용, 에너지 재생화가 불가능한 모든 포장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로 하여금 사용된 포장재료를 회수하고 그것을 처분 또는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며, 포장폐기물 처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업무와 분리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원화제도(Dual System¹⁷⁾)라고 부른다.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ing)을 에너지회수의 소각보다 우선토록 하여 제조, 유통, 소비, 재자원화 즉 순환형 사회경제구조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1)발생억제, (2)재사용, (3)재활용, (4)에너지회수 순서로 에너지를 인정하는 법 개정(1994년)을 하였으나, 소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장폐기물 재활용의 전문화를 위하여 독일은 1990년에 비영리재단법인으로 DSD(Dual System Deutschland GmbH)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원화제도에 참여하는 포장재의 제조자는 DSD사로부터 녹색점(Grüne Punkt)이라는 표시를 표시사용 계약 체결 후 부여 받아 포장재에 부착하면 DSD사에 의하여 재료나 물량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수거, 물질별로 분리되어 재활용시설로 운반·처리된다. 한편DSD사는 녹색점 판매 수수료로 운영된다. 이 이원화제도가 최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이나 제품에 대한 공유책임제도(Shared Product Responsibility, SPR)의 근간이고, DSD사가 대표적인 공유책임기관(SPRO)인 셈이다.⁸⁾

7) Fritz Flanderka, 독일에서의 포장물법과 이원체제(Duales System), 환경법연구, 제19권(1997), 42ff.

순환경제법은 폐기물의 발생 회피와 재이용 및 처리 우선 순위를 들으로써 폐기물을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폐기물은 회피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사용·재활용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폐기가 가능해 진다.

순환경제법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은 폐기물의 분류를 한층 상세하게 1)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 2)재활용이 가능한 것, 3)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4)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폐기물로 분류한다. 더 나아가서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종이류, 플라스틱류, 화학물질, 금속류, 유해물질 등으로 분류되어, 리사이클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2) 일본

일본⁹⁾은 2000년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과 법(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폐기물 배출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배출자 및 생산자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률은 순환형사회의 형성을 향한 법제도 정비사업¹⁰⁾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폐기물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폐기물 관련법은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관한법률(폐기물처리법, 1971년), 재생자원이용촉진에관한법률(재자원화촉진법, 1991년), 특정유해폐기물등의수출입의규제에관한법률(바젤법, 1992년), 용기포장에 관한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촉진등에관한법률(용기포장재활용법, 1995년),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전 리사이클법, 1998년), 순환기본법(2000년), 녹색구매법(2000년), 식품재활용법(2000년) 등으로 발전해왔다.

8) Ibid

9) 이에 대한 상세는 일본 환경성(편), 循環型社會白書, 79~110면 참조.

10) 상세는 일본 환경성(편) (주 10), 79~110면 참조.

순환형사회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순환적 이용에 사용되고, 최후까지 이용되지 아니한 것은 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되는 사회이다(순환기본법 제2조 1항). 이는 독일의 순환경제법과 근본 목적은 같으나 더욱 구체적으로 다룬 점이 다르다. 순환기본법에 의하면 폐기물은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리의 순으로 처리된다.

순환기본법에 의하면, 각 폐기물 주체별로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국가는 순환형사회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실시하며, 지방공공단체는 순환자원의 적절한 이용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순환형사회 형성에 관한 국가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수행하며,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제품·용기의 내구성 향상과 수리 실시체계를 확충하며, 그밖에 국민은 제품의 장기사용, 재생품 사용과 용기 등을 사업자에 인도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계획은 중앙환경심의회가 2002년 4월까지 구체적 지침을 마련, 환경장관에게 의견을 구하고 환경장관은 중앙환경심의회 지침에 따라 계획안을 작성하여, 2003년 10월까지 각의 결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감량의 국가 목표를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고, 일반폐기물은 2010년도에 1996년도 대비 5%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리사이클법에서 리사이클 비율이 가전분야 50~60%, 식품분야 20% 등으로 정해져있다.

일본 환경성은 녹색경제사회로의 구조개혁, 지구환경보전,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실현 등을 목표로 국내외 환경현안, 대응실태 및 대책을 『2002년도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순환형사회의 구현과 관련하여, '2002년도 중점 사업으로 개정 폐기물관리법(2000년)을 통한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확대, 불법투기 방지와 불법투기지역 환경 복구, PCB폐기물 처리와 함께 배출·제조업자 등의 책임 강화를 통한 폐기물 배출이 없는 Zero Emission 사회의 실현에 주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순환형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정책

(1) 문제의 인식제고, 교육 및 홍보, 전문가의 양성

순환형사회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 중에서도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의 재사용·재활용등 폐기물 문제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환경인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지도·계도도 중요하고, 시민단체(NGO)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

순환형사회의 필요성 인식제고 운동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도 민간단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물론 국민과 기업, 행정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또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육용 프로그램, 자료나 책자를 발간하여 폐기물 등의 환경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순환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는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자원봉사, 재활용품 사용운동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필요한 경비 모금도 크게 도움이 된다.

(2) 예산확보등 재정지원

정부는 순환형사회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물론 예산상의 지원이란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기존의 에너지 사용합리화 촉

진에 관한 사업, 자원재활용촉진 설비의 도입,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예산등도 포함된다.

(3) 환경기술의 진흥

우리는 폐기물처리장의 확보난 등 현재 대두되어 있거나, 앞으로 대두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환경저부하형·자원순환형 환경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환경관련 과학기술을 개발·촉진시켜야 한다. 이미 환경 선진국가에서는 바이오리사이클 기술이라든지 에너르기 저소비형 기술의 개발, 도시열원 네트워크 구축등 다양한 환경관련 과학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미래의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지구인들은 지구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원분자를 유용한 물질과 재료로 변환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및 질소산화물(NOx)·저황산화물(SOx)등의 대기오염분자랑 다이옥신으로 대표되는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을 분해하여 환경저부하형분자로 변환하는 혁신적인 환경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4)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21세기의 환경주체에는 정부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인접국가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포함된다. 즉, 이들 주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환경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때로는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관계에서 그러하고, 때로는 비용분담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선진국가의 개발도도상국에의 경제적·기술적 원조,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융자, 기체의 허가와 비정부단체(NGO)나 비영리단체(NPO)에의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면과제로서 환경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제품구입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제적 협력

현재 유해폐기물의 수출이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합의로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른 국내법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이 좀더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UN의 여러 환경기구나 OECD 등 각종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과 연대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4. 순환형사회 구현을 위한 법체계

(1) 법체계 일반

순환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무엇보다도 법체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별분야별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기본법과 개별영역 법을 총괄하여 하나의 법률로 포괄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순환형사회 구현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별도의 영역별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후자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는 2000년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영역별로 폐기물처리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건설리사이클법, 식품리사이클법, 그린구입법,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을 제정하였으므로 전자의 예에 속한다.¹¹⁾

또 순환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의 도입·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즉, 필요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체계를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먼저 순환형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법 제정을 고

11) 상세는 환경성(편), (주10), 94~107면 참조.

려할 수 있다. 이 법률에는 순환형 사회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 더 나아가서는 관계 당사자와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 즉,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순환형 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그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밝혀야 한다. 또 순환형사회구현기본계획 등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순환형 사회의 정의와 폐기물의 개념이 규정되어야 한다. 순환적 이용에는 재사용, 재생 이용, 재이용 등이 있는데,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발생억제, 재사용, 재활용, 열회수, 적정처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체 및 국민간의 역할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개별분야법

순환형사회 구현을 위한 법체계의 내용으로는 각 분야별 대상으로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건설리사이클법, 식품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 재활용제품구매법 등 각 개별 분야마다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가) 용기포장법

일반폐기물에서 용기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용기포장폐기물에는 소재가 리사이클이 가능한 것이 많다. 따라서 용기포장폐기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감량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폐기물을 용기포장제조업자등에게 재상품화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나) 건설법

특정 건설자재에 관하여 해체 및 재자원화 등의 촉진책을 강구하고, 해체사업자에 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재활용자원의 충분한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등을 통하여 자원의 최적이용의 확보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실현하고 생활환경의 개선 및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식품법

식품순환자원의 재이용, 식품폐기물 등의 발생의 억제 및 감량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식품관련사업자에 의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식품에 관련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 및 식품 관련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도모함과 더불어 식품제조등의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라) 특정가전법

가전제품의 대부분이 소매업자에 의하여 회수하고, 일부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회수되어 그 절반 정도가 매립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매립되지 않는 폐가전제품은 파쇄된 후 폐기되므로 부분품의 회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감량화와 유용한 부품 소재의 재생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리사이클법이 필요하다.

5. 순환형 사회 형성 정책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개 설

사회경제 활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으로 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생활환경의 오염, 파괴가 진전됨과 동시에 자원섭취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환경에의 부하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는 리사이클을 둘러싼 상황으로 지금까지의 재활용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높아지고 있는 폐기물의 발생, 폐기물의 질의 다양화, 최종 처분장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리한 과제에 대한 움직임을 가속시켜 사회를 지속 가능하도록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의한 물질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환경에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순환형사회기본법) 및 관련법들을 근거하여 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재사용 및 재이용을 진행함으로써 감량화를 촉진시키고 그 위에 처리해야 할 폐기물에 대해 안전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에 대한 책임과 코스트의 가운데 필요에 의해 사업자, 소비자, 지방공공단체 및 국가가 적절히 분담함과 동시에 제품의 개발, 제조, 수입, 유통, 소비, 배출, 회수, 재생이용의 각 단계에 있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리사이클을 추진하는 유인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의 책정

순환형 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심의 과정에는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지침을 심의·제시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3)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의 추진 이외에 사업자에게 일회용제품의 제조판매와 과잉포장 자제, 제품의 수명장기화를 기하는 등 제품 개발·제조 단계, 유통단계에서 배려를 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양식의 개선, 일회용 제품의 사용자 자제 등을 추구한다. 또한 폐기물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쓰레기 제로작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폐기물 발생이 적은 제품과 리사이클이

가능한 제품 등 환경에 부하가 적은 제품의 적극적인 구입을 권장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 구입에 솔선해서 참여하는 행정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 각 주체와 제휴한 조직이 발족한 재활용 제품 구입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권장함과 더불어 폐기물의 발생상황에 관련한 정보의 정비·제공을 추진한다.

폐촉법에 의거 폐기물의 배출억제와 재생이용 등을 통한 감량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이옥신 대책, 국가가 정한 감량화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는 기본방침을,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당해 지자체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계획을 결정하고, 또한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량 외에 처리에 관한 계획서작성을 의무화하고 국가, 도도부현과 사업자가 하나가 되어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적절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자원 유효이용촉진법(가칭)에 의거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관점으로부터 제품(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가스·석유기기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삭감, 내구성 향상을 꾀한 설계, 부품의 통일화·공통화, 사용단계에 있어 수리 등에 의한 장기간 이용의 촉진 등에 사업자가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며, 또 부산물의 발생억제,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량의 삭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슬래그, 진흙 등)에 의해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에 의한 부산물의 발생억제대책과 발생한 부산물의 이용촉진에 의한 리사이클 대책에 사업자 스스로가 계획적으로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

건설 리사이클법(가칭)을 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쓰이는 건설자재의 선택,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건설자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식품리사이클법(가칭)에 의거 식품의 구입 또는 조리방법 개선 등에 의해 식품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 배려할 것을 추진한다.

지역의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축의 구현에 있어 관련부처가 제휴하여 폐기물 제로 구상추진을 위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리사이클 관련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하드면에서의 지원 및 환경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에 대한 소프트면의 지원을 계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더구나 대량의 쓰레기 폐기로 처리에 한계를 겪고 있는 대도시권을 새로운 쓰레기 제로형의 도시로 재구축하는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도시재생본부가 정부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 본부는 대도시권 임해부 등에 광역순환도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선정함으로 폐기물 처리시설·리사이클시설의 광역적·종합적인 정비를 집중적,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환경사업단에서는 순환과 공생을 바탕으로 한 지역만들기 실현을 위해 폐기물 제로단지 건설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함과 동시에 계속대상지역을 선정,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순환자원의 순환적 이용

순환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관련되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 사용완료제품의 재사용 추진, (나) 순환자원의 회수·재생이용의 촉진, (다)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 수거, 재상품화 등의 추진, (라) 특정가정용기기 폐기물의 수집·재상품화 등의 추진, (마) 건설폐기물의 리사이클 촉진, (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상세한 연구는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음을 미루고자 한다.

6. 순환형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폐기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네트워크화

현재 폐기물을 배출할 때 그 발생량의 구성, 성분등의 정보가 관련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리사이클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사업자가 폐기물처리·리사이클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지워져야 한다. 또 인근의 다른 업종의 공장과도 순환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리사이클의 원료를 필요한 양만큼 확보함과 아울러 질의 안정화도 필요하다.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상황, 발생예상량, 폐기물에 대한 수요상황등에 대한 지역별 데이터베이스화,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3기관에 의한 정보의 인정, 네트워크화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zero emission 폐기물 정보교환소를 예로 들 수 있다.

(2) 재자원화 인센티브와 지원체제

관련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질이 좋은 리사이클 원료가 공급되어 리사이클 제품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정한 공적 관여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나 지역별로 건설폐기물, 식품찌꺼기에 관한 물질순환계획을 수립하고, 성분에 따른 재자원화비율의 목표달성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민간에 의한 시장참가를 쉽게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관여가 바람직하다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의 지원, 데이터 베이스 등에 의한 know-how의 공유화, 리사이클원료의 질적 안정화·균질화를 위한 제3의 분석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3) 순환마인드의 조성

순환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산업측의 개발은 물론이고, 국민이 청정소비자(clean consumer)로서 제품의 선택이나 적절한 배출을 통

하여 적극적으로 관련산업을 지원하는 동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지역이나 가정, 학교교육도 중요하다. 아울러 처리시설이나 처분장, 리사이클시설의 견학등을 통하여 처리사업이나 관련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확대생산자책임

I.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제품의 순환이용이 환경부하나 자원보전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시킬까, 그리고 소요 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대량폐기물사회에서 순환형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리사이클의 책임과 비용부담의 규율을 생산자책임이라는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확대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이란 통합 재활용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생산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이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되고 폐기된 후, 아직 사용되지 못한 제품에 대한 회수 또는 순환적 이용이나 처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고이다. 이 확대생산자책임에서 중요한 점은 누가 회수, 순환적 이용, 처분을 행하는가가 아니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인데, 이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가 미사용의 제품의 회수·리사이클·비용부담을 맡도록 한다면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제조의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회수·리사이클·처분이 쉽고,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생산비용이 저렴하게 만들어진 제품은 판매가격도 저렴할 것이므로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 결과 폐기물의 최종처분비용의 감소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책임의 원칙은 순환형사회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이 지어진다. 대량폐기사회에서는 폐기물처리는 지방자치체에서의 책임이었지만, 순환형사회에서는 주민, 소비자, 사업자, 행정청의 3당사자간에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순환형사회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비용은 적정하고 공평하게 부담된다. 미래에 이상적 순환형사회가 구현되면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주민과 소비자의 참가와 협력이 확대되어 효율성과 공평·공정성이 실현된다.

II. 개념

확대생산자책임이란 생산자가 그 생산된 제품이 사용되어 폐기된 후 까지도 당해제품의 적정한 재활용이나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폐기물등의 발생억제나 순환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적정처분을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연구할 것, 제품의 제질 또는 성분을 표시할 것, 일정한 성분에 대하여 폐기등이 된 후 생산자가 거래 또는 재활용을 실시할 것을 적시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고, 물건의 제조 단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부터 확대생산자 책임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확대생산자책임은 순환형사회구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론이다.

OECD에서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으로 확대생산자 책임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그 성과로서 OECD가맹국 정부에 대하여 가이드선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EPR정책과 program개발의 기반이 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OECD도 EPR의 핵심은 폐기물관리에 드는 정부의 재정부담, 즉 소비 후의 제품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수단¹²⁾이라고 하고 있다.

III. 책임의 내용

EPR에 대하여 비용의 부담과 구별하여 책임에 착안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EPR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환경부하저감의 일정범위를 생산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자연자원의 보전, 유해물질의 사용·발생이나 에너지사용의 저감, 최종처분으로 순환되는 폐기물의 삭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1. 책임의 범위와 분류

스웨덴에서는 1990년부터 EPR정책이 검토되어, 92년에는 다양한 EPR시책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이 작성되었다. 이에 의하면 EPR에서의 책임이 다음의 4종류로 분류된다.

- (1) 보상책임(liability)이란 당해 제품에 의한 환경영향에 관련된 보상 책임을 나타낸다. 그 범위는 입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사

12) 상세는 OECD, Extended and Shared Producer Responsibility: Phase 2 Framework Report, 1997, 5면 참조.

용이나 최종처분등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서의 복수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역시 EPR을 PL법상의 제조물책임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법률학의 입장에서는 논리의 비약이지만 그 견해는 보상책임으로서의 EPR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이란 생산자가 제품의 배출 후의 수집, 리사이클이나 최종처분 등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물리적 책임(physical responsibility)이란 생산자가 제품 또는 제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제로 물리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 (4) 정보제공책임(informative responsibility)이란 생산자가 환경면에서 본 제품의 성능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역시 통상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대금과 교환하여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상품의 인도 후에도 생산자가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 OA제품이나 자동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스계약은 그와 같은 계약형태의 하나이며, 제품을 사용한 후의 회수·리사이클은 생산자(리스회사)가 한다. EPR에서의 생산자의 제품회수·처리의무가 이 리스계약에서의 생산자의 계약상의 의무와 유사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EPR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비용부담, 리스크분담을 검토함에 있어 리스계약에서의 비용·리스크분담의 다양한 유형이 참고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책임을 분산하는 것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EPR정책논의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¹³⁾

2.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하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자원채취」는 생물자원, 광물자원, 화석연료자원을 제품의 원료로 채취한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가공처리」를 거쳐 「제조」공정이 있으며, 유통업에 의한 판매를 거쳐 제품이 「사용(소비)」된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이 끝나면 배출되고, 재사용, 리사이클로 순환되는 부분과 소각등의 「폐기물처리」를 거쳐 최종으로 「처분」으로 순환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EPR에 대하여는 「제조」의 하류, 결국 사용이 끝난 제품의 회수·재사용·리사이클과 「폐기물처리」 「처분」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논의의 전면에 나오기 쉽다. 그러나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자원채취」 「가공처리」의 단계에까지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EPR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상류의 과정에 대하여도 제조자등의 책임주체가 통제를 미치고,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환경부하의 저감을 도모하는 것이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각국의 EPR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종래부터 부과되어 있던 책임, 즉, 직장의 안전성,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처리, 생산활동에 수반되어 생기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책임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후의 폐기물처리까지를 포함하는데 그치고 있다.¹⁴⁾ 그 결과 생산

13) 상세는 Thomas Lindqvis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Environmental Economics, Lund University, "What is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s a Policy Instrument Seminar, May 8~9, 1998 참조.

14) 상세는 OEC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n the OECD Area: Legal and Administrative Approaches in Member Countries and Policy Options for EPR Programmes: Phase 1 Report, 1996, 8면 참조

자는 간접적으로 제품의 처리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원재료의 선택, 제조공정, 포장등을 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3. 책임주체의 범위-미국의 EPR

미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1995년에 EPR의 책임을 담당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자나 폐기물처분업자도 라이프사이클에서의 환경영향을 경감하는 책임을 분담한다고 하는 생각을 제시하였다.¹⁵⁾ EPR의 명칭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아닌 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로 되었다.¹⁶⁾

그런 배경에는 산업계에 대한 부담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정치상황이나 폐기물정책에 있어서 감량보다도 유해폐기물관리가 중시되고 있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IV. 제도의 유형화

OECD국가에서는 EPR제도의 유형으로서 (1) 직접규제-법령에 근거한 책임, (2) 자주협정-규제에 대신하여 정부와 업계단체등이 자주적으로 맺은 협정, (3) 경제적 수법-제품과징금, Eco-Task, 사전처리수수료, deposit 등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¹⁷⁾

15) 상세는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America, 1995 참조.

16) 상세는 Gary Davis, Center for Clean Products and Clean Technologies, The University of Tennessee, "Is there a broad principle of EPR?," 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 as a Policy Instrument Seminar, May 8~9, 1998 참조.

17) 상세는 Gary Davis, Center for Clean Products and Clean Technologies, The University of Tennessee, "Is there a broad principle of EPR?," 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 as a Policy Instrument Seminar, May 8~9, 1998 참조.

구체적으로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독일의 포장폐기물령, (2)의 예로는 네덜란드의 용기포장자주협정, (3)의 예로는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소평봉지에의 과세, 덴마크의 음료용기를 대상으로 하는 deposit system 등이 있다.

(2)에 있어서 업계조직의 책임범위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폐기물의 수집 및 리사이클의 보증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고, 이것에 드는 비용은 각 생산자에게 분배되며, 생산자는 그것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게 된다. 수집비용은 수집과 운반시스템의 비율에 따라 자치체에 의한 회수비용보다 비싼 경우와 싼 경우가 있다. 또 회수노력이 충분한가에 대하여 업계조직과 자치체간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리사이클의 보증

회수된 제품의 리사이클의 보증만을 하는 유형이 있다. 제품의 전 회수량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리사이클능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①리사이클업자에게 업계단체가 반입하는 모든 리사이클자원의 수취를 의무로 할 것인가, ②업계단체에게 모든 리사이클자원을 기존의 리사이클업자에게 반입할 것을 의무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리사이클 시장이 리사이클자원의 증가를 흡수할 수 있다면 ①② 모두를 의무로 함으로써 인프라투자관련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리사이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리사이클목적의 폐기물의 수출, 리사이클능력확대를 위한 투자, 또는 현재의 리사이클능력을 감안한 리사이클목표의 변경등의 어느 쪽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의하면 회수·보관의 비용은 자치체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위탁하고 있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가 재상

품화를 함으로써 리사이클책임을 달성하고 있다. 또 가전리사이클법에서는 운반·리사이클비용을 소비자가 배출시에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자치체의 리사이클관련비용의 補塡

업계단체가 자치체의 리사이클관련비용을 자치체에게 보전하는 유형이다. 그 액은 '회수비용+리사이클업자에게의 운반비용-그것에 의한 수입'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수집량·리사이클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V. 제도의 평가

EPR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폐기물감량화라고 하는 목적의 달성도나 제도의 경제효율성, 시스템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이나 환경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OECD의 보고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의 지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¹⁸⁾ 그리고 목표달성의 이익이 코스트를 상승하는가는 각국의 제조조건, 문화적 배경등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한다.

(1) 환경면에서의 효과

이것은 환경목표의 달성이나 환경개선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환경의 질의 향상, 건강리스크의 저감이나 자원의 효율성 등에 의하여 정량화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자연자원의 보전, 에너지사용량의 삭감, 최종처분의 최소화, 유해폐기물의 발생·배출삭감등이 달성정도를 측정해야만 하는 목표가 된다.

폐기물감량화라고 하는 목표에 관하여 가장 의미가 있는 수치는 「생

18) 상세는 OECD, op. cit., 1997, 43~47면 참조.

산단위당의 쓰레기발생량¹⁹⁾일 것이다. 이것은 정책당국이 제시하는 쓰레기의 발생억제나 감량화의 신호에 대하여 기업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이기도 하다.

폐기물감량화 이외의 환경목표에 대하여는 원료간의 이전, 제조공정의 변화, 리사이클에 의한 자원의 소실, 처리가공물의 배출, 리사이클공정에서 생기는 잔류물의 관리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의 수치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복수의 환경목표간의 교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소각처리를 회피함에 따른 이익과의 비교형량을 근거로 하여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2) 경제효율성

이것은 정책실시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경제에서 가격, 고용, 기업이익이나 경쟁력, 경제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보게된다.

(3) 기술혁신의 진전

이것은 EPR정책의 도입으로 어떤 기술진보, 운영면에서의 진보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동적인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지표이다.

(4) 정치적 수용성

이것은 정책의 도입·시행에 대한 정치적 수용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민참가의 정도,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이나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5) 실시가능성

이것은 정책의 시행에 있어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가라고 하는 시각이다. 검토해야 하는 요소에는 타부문의 정책과의 원활한 통합, 운영의

19) 상세는 OECD, op. cit., 1996, 12면 참조.

간소화와 유연성, 모니터링, 라이선스 및 시행을 위한 비용 등이 있다.

환경 선진국가에서는 폐기물 관련 법률에 EPR의 이념이 도입되어 있다. EPR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 등은 아직 발전 중에 있으며, EPR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체화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자연자원의 보전이나 최종처분량의 저감 등의 환경목표에 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논의되어 나갈 것이다.²⁰⁾ 또 그것에 수반한 목표 달성비용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책임의 유형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공평한 분담이 되는가를 실행가능성과 더불어 고려하고, 정책형성에 반영시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제4장 폐기물처리의 국제화

I. 국제조약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강화

1. 폐기물에 관련된 국제조약과 규제기구

폐기물에 관련된 국제조약은 1982년 UN해양법조약,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1972년의 런던조약과 1996년의 그 개정의정서, MARPOL73/78조약등이 있다. 72년의 런던조약(정식명칭은 폐기물기타의 물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조약)의 내용은 전면금지 및 특별 또는 일반허가, 허가를 받은 체약국의 범위, 국제수입규제의 도입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3년 런던조약의 개정에 의하여 규제가 강화되었는

20) 상세는 循環型社會ハンドブック(주5), p.275ff 참조

데, 그 내용은 해양소각의 금지, 방사선 폐기물의 투기금지등이다. 더 나아가 96년의 런던조약개정정서의 중요내용은 해양투기와 해양소각의 일반적금지, 예방적접근의 채택, 신허가의 요건등이다.

또 유해폐기물의 越境문제에 관하여는 1989년의 바젤협약과 1995년의 그 조약개정에 의한 규제강화(미발효)등이 있다. 이처럼 국제조약은 해양오염을 시작으로 유해폐기물의 越境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왔다. 바젤조약의 구조는 규제되는 폐기물과 국제수송(월경이동)의 개념 및 국내수송과 국제수송규제의 접점, 국제수송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바젤조약과 관련지역조약의 양립성문제라든지 바젤조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발효된 95년의 개정바젤조약은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데, 관련조약에서의 개도국에의 수출금지(즉, 최종처분의 금지)와 리사이클처분의 금지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²¹⁾

역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는 UN환경계획(UNEP), UNESCO,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보건기구(WHO) 등 많은 UN조직들이 있으며, 이들 기구들이 해양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에 관한 규제

바젤조약에서는 유해폐기물 규제를 발생단계, 유해물질, 특별한 처리를 요하는 폐기물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그 내용으로 총 47개의 유해폐기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유해폐기물이 월경이동하는 이유를 OECD는 1989년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① 유해폐기물의 발생국에 있어서 그 처리비용이 많은 점.

21) 바젤조약에 대하여는 UNEP, The Basel Convention, A Global Solution for Controlling Hazardous Wastes, UN / NY and Geneva (1997) 참조.

- ② 발생국에 있어서 특정 폐기물의 처분용량이 감소한 점.
- ③ 발생국에서 육상처분하고, 그 결과로 장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액의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 ④ 발생국에 있어서 유기용제 등 특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 점.
- ⑤ 발생국에 있어서 배출사업장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장소에서의 처리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 점.
- ⑥ 발생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한 점.
- ⑦ 수입국에 있어서 복수의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존재하는 점
- ⑧ 발생국이 최종처리되는 폐기물로부터 有價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국제시장이 존재하는 점.
- ⑨ 발생국보다도 다른 나라의 처리시설이 가까운 경우.

최근 유해폐기물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고자 시도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일본의 경우 건)고 있으며, 그 반수가 1986년 이후에 발생하였다(일본의 경우 100건 넘게 발생하였고, 그 반수가 1986년 이후에 발생함).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젤조약」이 채택되어 1992년 5월에 발효되었다.²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의 국제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들은 점차 강화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특히 1996년이후의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1995년이후 유해폐기물의 개도국에의 월경이동 금지에 대하여는 현저하다. 이들 활동은 해양이나 개도국에의 환경유해성이 높음에 따른 현상이다(96의정서의 예방적 접근, 바젤협약 개정전문 7 참조).

22) Kummer, K., *International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larendon Press / Oxford (1995) 참조.

한편 선진국상호간의 폐기물무역에 관련한 환경유해성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에 이론이 있다. 이는 기존의 국제기준이 개개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판단의 상이에 기인한다.²³⁾

모든 국내폐기물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다수국가간 조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개별분야에서의 국제기준의 책정과 그 국내실시의 강화, 더 나아가 이를 보완하는 지역적, 양자간 조약에 의한 국제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II. 폐기물처리의 국제협력의 추진

1. 국제협력의 필요성

개발도상국의 폐기물은 미수집, 불법투기,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14세기의 유럽에서는 쓰레기처리가 부적절한 결과 전염병(페스트)에 의하여 유럽인구의 약 반수가 사망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明治시대에는 쓰레기처리가 부적절하여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유행하여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은 그와 같은 과거 선진국이 경험한 사례를 현재 체험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가운데는 분뇨쓰레기가 섞여 있거나, 산업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함께 매립처리되고 있는 등의 원인으로 지하수오염을 비롯한 전염병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처리는 공중위생의 유지와 더불어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지구환경의 보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23) Kummer, K., *International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larendon Press, Oxford(1995), pp. 285-286

선진 국가들은 폐기물처리나 관리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기술협력이나 자금협력이 요청되고있다.

III. 쓰레기소각플랜트의 해외수출의 확대

1. 해외수출확대의 배경과 현황

원래 쓰레기소각기술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개발도상국에 도입된 것이 주류였다. 그 후 많은 나라가 자국의 쓰레기질(質)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해방지규제의 강화에 따른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대규모 쓰레기소각플랜트는 다기능형시설인 종합플랜트화되고 있으며, 지구환경에 친숙한 도시건설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청소공장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가진 다기능형청소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①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처리장으로서의 기능
- ② 燒却排熱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화력발전소와 그 전기를 다루는 변전소로서의 기능
- ③ 발전한 排熱을 열원으로 하여 지역냉온방을 하는 열공급센터로서의 기능
- ④ 증기를 열원으로 하여 고온수를 만들고, 온수풀이나 복지시설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餘熱이용센터로서의 기능
- ⑤ 소각처리에 수반하여 배출된 排水를 정화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으로서의 기능

최근에 와서는 선진국의 쓰레기소각플랜트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 국제협력과 그 과제

폐기물분야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하여 제시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개발도상국은 각 국가의 지역조건, 경제수준에 적합한 폐기물서비스체제의 정비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진국의 기준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폐기물협력이 점차 기대되고 있는데, 그 열쇠는 해외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양성에 있다.
- ③ 한정된 자원밖에 없는 개도국의 현상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④ 개도국자치체의 상급자에 대하여 폐기물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홍보하는 샐러리맨적 능력이 개도국협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 ⑤ 세계은행등과 같은 세계기구 사이에서 개도국폐기물협력의 정보와 know-how의 교환을 더욱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⑥ 개도국도시에 있어서 폐기물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강화, 재정기반의 확립, 전문가의 육성, 위생교육의 강화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⑦ 선진국의 기술기준은 개도국의 한정된 재원이나 인재를 고려한다면 확실히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15~20년정도의 기간에 단계를 거쳐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 ⑧ 기술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피원조국을 대신하여 계획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피원조국이 작성한 것을 지원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⑨ 도시간의 자매결연관계를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기술협력을 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 ⑩ 원조기관간의 협조회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하여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 ① 조사단을 파견하는 경우는 그 프로젝트매니저는 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하여 정통한 실무가여야 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 ② 개도국의 연수생이 자국에 돌아가 연수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가 특히 적다. 이것은 연수로 얻은 정보나 지식 그것이 지위로 되기 때문이다. 이 점도 고려하여 연수생을 받거나 기술이전을 행할 필요가 있다.
- ③ 전문가의 역할과 직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전문가의 정책에 따라 업무결과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전문가는 일에 정통한 것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폐기물 처리현황

○ 처리주체별

(단위: 톤/일)

구분	연도별	계	자치단체
생활 폐기물	1995	47,774	26,408
	1996	49,925	32,842
	1997	47,895	32,132
	1998	44,583	26,603
	1999	45,614	24,105
	2000	46,438	21,15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995	95,823	1,396
	1996	96,984	3,504
	1997	93,528	6,034
	1998	92,713	5,492
	1999	103,893	1,926
	2000	101,453	1,464
건설 폐기물	1996	28,425	5,465
	1997	47,777	6,028
	1998	47,693	4,741
	1999	62,221	4,564
	2000	78,777	1,457

○ 처리방법별

(단위: 톤/일)

구분	연도별	계
생활 폐기물	1995	47,774
	1996	49,925
	1997	47,895
	1998	44,583
	1999	45,614
	2000	46,438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995	95,823
	1996	96,984
	1997	93,528
	1998	92,713
	1999	103,893
	2000	101,453
건설 폐기물	1996	28,425
	1997	47,777
	1998	47,693
	1999	62,221
	2000	78,777

대행처리업소	자가처리업소	재활용업소	해양투기
9,111	999	11,306	
3,159	840	13,084	
1,061	795	13,907	
1,792	622	15,566	
3,366	749	17,394	
5,580	539	19,167	
22,047	13,451	58,929	
16,677	10,217	66,586	
21,044	12,082	54,368	
16,785	12,265	53,955	4,216
11,962	27,627	55,967	6,411
12,711	32,072	48,263	6,943
6,129	242	16,589	
4,800	376	36,573	
3,266	112	39,574	
8,987	6,170	42,500	
10,545	4,436	62,339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투기
34,546	1,922	11,306	
34,116	2,725	13,084	
30,579	3,409	13,907	
25,074	3,943	15,566	
23,545	4,675	17,394	
21,831	5,440	19,167	
31,203	5,691	58,929	
24,743	5,655	66,586	
33,733	5,427	54,368	
29,175	5,367	53,955	4,216
19,256	6,338	71,888	6,411
18,962	8,034	67,514	6,943
10,988	848	16,589	
9,747	1,457	36,573	
7,112	1,007	39,574	
10,600	1,278	50,343	
10,021	2,071	66,685	

제5장 맺는 말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은 지난 세기의 연장선 상에서 그 유산인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형의 사회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출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 저감과 재활용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장 포화 상태 문제 외에도 재활용 제품의 구매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폐기물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폐기물법과 정책을 검토한 후 그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폐기물법과 정책은 '60년대의 모질청소법 시대와 '70년대의 환경보존법 시대, '80년대의 폐기물 관리법 시대, '90년대의 환경복수법 시대를 거쳐 순환형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1세기의 우리나라가 전개할 바람직한 폐기물법과 정책으로는 순환형 사회시스템의 구현, 확대 생산자 책임 원칙의 도입, 폐기물 처리의 국제화와의 대응 방안, 그 밖에 환경 기술의 발전이나 재활용 용품의 구매에 관한 법정책,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과제 중에서 순환형 사회 시스템 구현 법정책과 확대 생산자 책임 법제도의 도입, 그 밖에 폐기물 문제의 국제화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비슷한 개념인 순환형 사회는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품을 철저히 재자원화하여 폐기물을 저감시켜 나아가는 사회라는 개념이므로 21세기의 우리나라 폐기물법과 정책의 중요철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법체계도 도입·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장·단기로 구분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를 해

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생산자가 생산된 제품이 사용되어 폐기된 후까지도 당해 제품의 적정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확대 생산자 책임에 관한 법정책도 21세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유형과 책임의 내용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겠다. 폐기물 문제의 국제화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와 유해 폐기물의 월경 이동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적 협약으로 규제되고 있다. 미래의 21세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빈번할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관한 법정책적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그 밖에 미래의 현안 과제 중, 국가 정책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또 21세기는 지방화 시대가 만개할 것이므로 효과적인 환경법정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들 미래의 과제들에 대하여 입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21세기 우리나라가 순환형 사회로 구현되기 위하여는 소비자, 즉, 국민과 중앙 정부와 지자체를 포괄한 정부 및 생산자 등 모든 사회 주체가 역할 분담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UNEP, The Basel Convention, A Global Solution for Controlling Hazardous Wastes, UN / NY and Geneva (1997), p.19.

Kummer, K., International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larendon Press / Oxford (1995), p. 180.

【ABSTRACT】

Waste Law and Policy for the 21th Century in Korea

Park, Soo Hyuk · Choi, Yearn Hong · Kim, Tai Hwan

In Korea, some Waste Law and Policy has propelled, but the result is not cesirable.

To solve such problem, this paper in ends to study some new laws and policies of industrialized countries for the New Century.

In the carlier times the principle of waste law was followings : The production of waste should be avoided, waste should be used, it must deposited. In the recent years, however, these principles of waste laws and policies should be supplemented by such as recycling.

For the 21th century, this paper suggests some new Laws and Policies such as Recycling of Circulate(Kreislauf) Type Society(Germany and Japanese), Extened Product Responsibility(EPR) or Shared Producer Responsibility(SCR) : International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Improve Waste Technology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tc.

In conclusion, Korean Waste Law and Policy must examine positively to introduce such new trend of Laws and Policies or the New Century.